

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포상 운영 규정안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07. 1. 24 - - - - - 옥영복의원외 5인
- 나. 회 부 일 자 : 2007. 1. 25
- 다. 상정 및 의결일자 : 제145회 임시회(폐회중)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('07.1.30)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임일심 의원)

가. 제안이유

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포상운영제도를 명문화하고 의회발전에 기여한 단체 및 개인의 포상에 내실을 기하기 위한 규정을 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포상 대상 (안 제2조)
- 포상의 종류 및 부상 (안 제3조)
- 공적심사 (안 제10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본 제정안은 사하구의회 포상운영제도를 명문화하는 내용으로

- 그동안 의회발전에 기여한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사하구의회 의장 명의로 각종 표창장, 감사장, 상장 등이 수여되어 왔지만 그 포상에 대한 근거가 명문화 되어있지 않았으나
- 이번 회기에 「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포상 운영 규정」을 신설 제정하여 그 포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
- 이는 당초 지방의회 설치 초기에 제정되었어야 하나 그러하지 못해 늦은 감은 있지만 포상근거 마련과 사하구의회의 위상 제고를 위하여 본 규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론요지 : 생 략

6. 심사 결과 : 원안가결